

의안번호	2217525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6.8.13.
추계번호	26D1493

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(안 제4조)	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(안 제5조)	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해서는 「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 ¹⁾ 에 따름	의무규정
3	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(안 제6조)	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재정 지원(안 제7조)	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-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유치 등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-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	재량규정
5	국제투자분쟁 예방·대응단의 구성 및 기능(안 제8조)	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정부 간 협력과 예방 및 대응체계를 총괄하며, 국제투자분쟁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 국제투자분쟁예방·대응단을 구성함(제1항)	의무규정

1) 「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)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설치·운영
 2.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
 3.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5조(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)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·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분쟁해결시설의 홍보
2.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(안 제4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등(안 제5조)	
3	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(안 제6조)	
4	재정 지원(안 제7조)	
5	국제투자분쟁예방·대응단의 구성 및 기능(안 제8조)	미대상: 현행 「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」의 대응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임

2. 상세 사유

□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, 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,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제정안의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국제투자분쟁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, 제정안 시행 이후 안 제4조²⁾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추진방안, 관계기관 협의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므로,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2) 「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」 제4조(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) ① 법무부장관은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국제투자분쟁 기본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투자 고충 관리 및 국제투자분쟁 위험 요소의 조기식별에 관한 사항
2. 국제투자중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국제투자분쟁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
4. 국제투자분쟁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입법부·사법부의 행정사무 처리기관에게 자료 제출 및 예산 편성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의 수립, 협조 요청의 범위 및 방법, 기본계획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